

[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 사안의 개요

-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케팅 업무대행 계약" 체결 관계
- (3) 피고인의 역할 -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 계약조항

8. "갑"과 "을"은 개발 및 생산·수출 하는 제품에 대한 비밀유지 및 "갑"과 "을"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서로의 신뢰를 위하여 타인 또는 타사에 개인 정보 및 업무진행 상황 등을 비밀 유지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또는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갑"과 "을" 모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 및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 분쟁사안의 발생

- (1) 피고인이 2016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 (3) 총 6회,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

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판결요지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독립적인 중개인이 아닌 피해회사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보이고,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적어도 동종의 물품을 직접 생산의뢰하여 해외로 수출하지는 못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회사 생산물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직접 피해회사의 생산라인까지 이용하여 수출하여 자신 또는 G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해외 마케팅과 관련하여 성공보수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독립적인 중개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서 및 그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품 및 업무협정, 투자 및 제휴와 관련하여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업무수탁 내지 수입을 받은 지위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4-5곳의 한국 업체를 상대로 더 수출입업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회사도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만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출입업무 대행을 하고 있던 회사 중 피해회사와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던 회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생산제품에 관하여 10여 년간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였고, 계약에 따라 해외거래처들로부터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주문을 받을 경우 피해회사에게 우선적으로 협상 지위를 부여할 의무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장하고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 피고인의 지위, 해외매출처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비용과 기회를 주어 확보하고 관리해 왔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외 매출처와의 사업관계는 피해회사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매출처에 대한 관리 및 연락 업무를 하는 것은 본래 피해회사의 사무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오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피해자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및 마케팅 비용에 드는 실비 상당액도 보전하였으며, 성공보수조로 매출대비 4~5%의 상당한 금액(이는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생산비를 제외하면 매출로 얻는 이익의 1/6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판결 주문 -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